

# 모아저축은행 「퇴직연금 정기예금」 상품설명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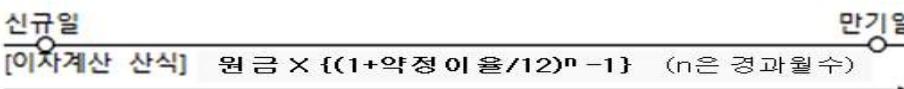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◆ 이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「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」, 「거치식예금약관」,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 및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, 동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

## 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 품 명 : 「퇴직연금 정기예금」
- 상품특징 :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금 상품

## 2 거래 조건

- 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이며,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약관, 증서 등 계약서류에 표시됩니다.

구 분	내 용	
가입대상	•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	
가입금액	• DB형 - 제한없음	• DC형 및 IRP형 : 5천만원까지
계약기간	•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: 1년, 2년, 3년 •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: 3년	
예금자 보호여부	DC / IRP	<b>해당</b>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"5천만원 까지"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 ※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됨
	DB	<b>비해당</b>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적용이율 등 (세금납부 전)	• 기본이자율은 신규가입일(또는 재예치일)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약정이율 적용 ※ 신규(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)시 적용이율은 변경될 수 있음	
이자계산방법	•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별 약정이율로 계산한 금액(원미만 절사) • 이자계산 산식 = 원금 $\times \{(1+약정이율/12)^n - 1\}$ (n은 경과월수)	
		

이자지급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 지급</li> </ul>												
만기처리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</li> <li>확정기여형(DC), 기업형(IRP) 또는 개인형(IRP) 퇴직연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되고, 동 원금과 이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대기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동 기간 시작일 당시 결정된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운용 후 상환.</li> <li>디플트옵션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
일반중도해지 이자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규/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</li> <li>기본산식 = 신규(또는 재예치)시점 약정금리 × (차등률) × (보유기간/계약기간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보유기간</th> <th>1개월 미만</th> <th>3개월 미만</th> <th>6개월 미만</th> <th>9개월 미만</th> <th>36개월 미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차등률</td> <td>신규일 시점의 보통예금 이율 <math>\times 20\%</math></td> <td>약정이율 <math>\times 30\%</math></td> <td>약정이율 <math>\times 60\%</math></td> <td>약정이율 <math>\times 60\%</math></td> <td>약정이율 <math>\times 80\%</math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보유기간	1개월 미만	3개월 미만	6개월 미만	9개월 미만	36개월 미만	차등률	신규일 시점의 보통예금 이율 $\times 20\%$	약정이율 $\times 30\%$	약정이율 $\times 60\%$	약정이율 $\times 60\%$	약정이율 $\times 80\%$
보유기간	1개월 미만	3개월 미만	6개월 미만	9개월 미만	36개월 미만								
차등률	신규일 시점의 보통예금 이율 $\times 20\%$	약정이율 $\times 30\%$	약정이율 $\times 60\%$	약정이율 $\times 60\%$	약정이율 $\times 80\%$								
예금 해지 시 불이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만기 전 예금해지 시 <b>중도해지이자율</b> 적용</li> </ul>												
특별중도해지 사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</li> <li>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,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,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</li> <li>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</li> <li>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</li> <li>수탁자의 사임</li> <li>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</li> <li>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</li> <li>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</li> <li>수수료의 징수</li> <li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</li> </ol>												
특별중도해지 이자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규일(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)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. 이때, 약정이율이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금리를 의미함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예치기간 6개월미만 :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</li> <li>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: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</li> <li>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: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</li> <li>예치기간 2년이상 3년미만 :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</li> </ol> <p>※ 단, 특별중도해지 사유 제9호 및 제10호에 의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 적용</p> </li> </ul>												

<b>분할 지급 (일부 지급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<b>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</b>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,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단,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</li> <li>2.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</li> <li>3.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인출</li> <li>4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</li> </ol> </li> </ul>
<b>계약의 해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사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</li> </ul>
<b>제한사항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계좌에 <b>압류, 가압류</b> 등이 등록될 경우 <b>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</b></li> <li>•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<b>질권 설정, 담보제공, 지급정지, 상계 등 불가</b></li> </ul>

### 3 | 유의 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, 지급정지,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,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.
- 이 예금은 세금우대, 생계형(비과세)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
- 이 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, 해당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.
- 판매사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,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,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,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,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) 금융상품 명칭,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를 포함한 서면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.

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판매 금융회사, 모아저축은행 고객센터 (☎032-430-33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[www.moasb.co.kr](http://www.moasb.co.kr))로 문의하실 수 있고,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.  
또한 당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.